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운영 규정

(2009. 3. 3)

제1장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의 목적과 운영

제1조 (보수교육 목적) 청소년상담사로서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상담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수교육 계획)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이하¡보수교육¡)의 기본방침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 혹은 연수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보수교육 대상)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보수교육 과정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급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보수교육 과정) 보수교육과정은 1급, 2급, 3급 및 통합과정으로 개설할 수 있다.

제5조 (보수교육 방법) 보수교육과정의 운영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할 수 있다.

1. 이론강의: 청소년상담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선정하여 강의한다.
2. 세미나: 청소년상담사의 관심영역을 심도있게 연구, 토의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진행한다.
3. 실습: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청소년상담 관련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실습시간을 운영한다.

제6조 (보수교육 시간) 보수교육 시간은 1일 8시간 내외로 구성할 수 있다. 단, 시간은 보수교육 과정별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7조 (보수교육 교육비)

① 보수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수교육 참가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② 보수교육 교육비는 자격검정위원회 혹은 연수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8조 (교육비 환불) 해당 보수교육 개강 전일까지 보수교육신청을 취소하는 자에 한하여 환불한다.

제9조 (보수교육 제한)

① 보수교육 신청자가 사전조치 없이 불참할 경우 교육 패널티제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 패널티제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2장 보수교육 강사

제10조 (강사) 보수교육강사는 해당영역별 박사학위 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1급 소지자, 또는 그 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되는 자로 한다.

제11조 (강사선정 및 위촉) 보수교육 강사선정 혹은 위촉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이하¡ 상담원¡) 원장에게 일임하여 위촉한다.

제3장 보수교육 평가 및 수료

제12조 (평가) 교육생의 자질 향상과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정 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평가방법) 평가 종류 및 방법은 자격검정위원회 혹은 연수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수료기준) 전체 보수교육 시간의 90% 이상을 이수한 자를 수료자로 한다.

제4장 연수운영위원회

제15조 (설치) 보수교육 제반사항 중 자격검정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위하여 상담원내에 연수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 (구성) 연수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담원 원장이 되고 위원은 상담원 실장 및 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사전심의사항) 연수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① 보수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②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제18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보수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수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육 패널티제 적용 기준

	내용
패널티 점수	**[패널티 10점]** 교육 시작일의 7일전(국,공일 제외)부터 2일전 24:00까지 취소할 경우 **[패널티 30점]** 교육시작일의 1일전(국,공일 제외)부터 당일 취소할 경우
패널티 적용	**[패널티 기준점: 50점]** - 누적벌점이 50점 이상일 경우, 초과 당일부터 1년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육을 참가할 수 없음 - 점수는 누진제이나 벌점적용 후 기존 점수는 삭제됨
패널티 예외	- 천재지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신병 치료 (미용 목적의 치료는 제외), 기타 본원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 상기의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패널티 여부를 공지